

8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발표

- 8개 공기업 13개사의 3,933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에 따라 과징금 총 52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간 실시한 내부거래 규모가 큰 정부투자기관 등 8개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기업의 13개사가 18개 자회사에 대해 총 3,933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의 촉진 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체 중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합병·매각 등 구조조정을 완료한 자회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했으며, 내부거래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 4개 공기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거래강제행위 등 4건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사실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낙찰율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지원해 준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자금의 저리대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시 자회사의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자회사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지원하는 관행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연하게 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회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나 안전의 확보, 긴급공사나 영입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회사와의 계약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방향으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및 공기업의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 공기업별 내부거래 및 과징금 규모 ◆

(단위: 억원)

공 기 업 명	지원업체수	수혜업체수	거래규모	지원금액	과징금액
한 국 전 력 공 사	2	3	1,354	137	28
한국전기통신공사	2	3	1,276	31	7
농수산물유통공사	2	2	118	4	2
한 국 가 스 공 사	3	2	371	19	7
대 한 주 택 공 사	1	4	586	42	5
한 국 도 로 공 사	1	1	66	2	1
한 국 토 지 공 사	1	2	129	16	1
한국지역난방공사	1	1	33	3	1
계	13	18	3,933	254	52

◆ 구조조정 완료회사 및 과징금 면제 현황 ◆

공 기 업 명	자 회 사 명	자회사의 구조조정내용(시기)	과징금면제액 (백만원)
대한주택공사	주공종합감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신설합병('99.4.3)	1,234
	한양산업	한양목재에 합병('99.1.16)	77
한국토지공사	토공종합감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신설합병('99.4.3)	970

각 공기업별 부당내부거래 행위 및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97.4.1.부터 '98.12.31.까지의 기간 중 전자계량기의 검침업무에 대하여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일종합시스템(주) 등 비자회사에 비해 약 15% 정도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한전산업개발(주)를 지원하였으며, '98.4.20. 「연돌구조물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설계 및 시공을 일괄발주한 후 한국전력기술(주)는 수주받은 공사 중 실시설계 부문을 제외한 자재구입 및 시공 등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96.11.5. (주)건화상사와 「154Kv 인제-간성 송전선로」 건설공사용으로 3,439백만원 상당의 철탑구매계약을 체결·시행하면서 '98.2.10. 552백만원 상당의 철탑에 대하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른 조건의 변경 없이 납기만을 예정된 납기일인 '98.3.15.에서 최장 '98.12.10.까지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주)건화상사를 지원하였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통신은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주) 및 한국통신진흥(주)와 각각 공중전화 유지·보수 및 그룹텔 등 통신시설 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당월 위탁수수료를 익월 20일까지 지급하여 오다가 '97년 10월부터 '자회사의 운용자금 안정화'를 위하여 수수료 지급방법을 월별 후급에서 분기별 선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으며, 한국공중전화(주)는 '97.7.14. 자사 소속의 57명의 기술인력을 한국통신프리텔(주)에 파견하면서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의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였고, 한국통신프리텔(주)로부터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를 매월 최장 45일 지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한국통신프리텔(주)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통신은 SK텔레콤(주) 등 4개 개인이동통신사업자와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광중계기용 광코아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전용회선 임대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전용회선을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보다 광코아 이용대가를 km 당 최고 20만원까지 높게 적용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도 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냉장(주)는 '98.2.13. 자회사인 한국축산(주)가 축협중앙회로부터 축산발전기금 1,600백만원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비자회사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98.2.12. 자회사인 한국축산(주)로부터 선급금 지급 요청을 받고 당초 체결한 "원료돼지 생산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선급금 6,200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선급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자회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냉장(주)는 '98.9.1.부터 9.12.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생산·판매하는 추석선물세트 판매 제고를 위해 사장의 지시로 임직원에 대해 직급별로 판매금액을 정하고 동 판매대금을 '98년 10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임직원에 대한 거래장제행위도 하였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공급에 필요한 「상계-의정부간 주배관건설공사」 등을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가스기술공업(주)는 이를 다시 대부분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으며, '9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한국가스ENG(주)에 초기설립에 따른 관리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속직원 6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면서 파견직원의 급여 일부와 퇴직금급여충당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97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건설업체 등과 건설공사 및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준공대가를 25일 내지 82일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64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안주택공사

대안주택공사는 '98.10.15.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익월 5일까지 지급한 반면, (주)뉴하우징이 수납하여 주택공사에 주어야 할 임대료 등은 (주)뉴하우징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익월말까지 입금토록 하는 등 임대료 등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으며, '97.4.1.부터 '98.12.31.까지의 기간 중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비자회사에게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한 반면, 자회사인 (주)주공종합관리공단 지원을 위해 지원물량 배정계획에 따라 동공단과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하는 등 책임감리용역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지원하였으며, '98.1.1.부터 12.31.까지의 기간 중 주방가구, 승강기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비자회사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주)한양목재 등 3개사에게만 총 12,754백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98년 4월 (주)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부터 40명의 잉여인력을 파견받아 용지매수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주)고속도로관리공단에 파견인력의 인건비 외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으며, '98년 4월 (주)고속도로관리공단과 「부대시설확충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협약에 의거 부대시설확충업무를 (주)고속도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토록 함에 있어서 '98.5.18.부터 '98.11.2.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보다 더 많은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다.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는 '97.1.1.부터 '98.12.31.까지의 기간 중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비자회사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계약한 반면, 자회사인 (주)한국토지공사종합감리공단 지원을 위해 동 공단과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총 12,541백만원을 발주·계약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으며, '97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의 기간 중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타 및 (주)한국토지공사종합감리 공단에 각각 직원 3명과 7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면서 '97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 및 퇴직 급여충당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열배관 및 열생산시설 비파괴검사용역을 경쟁입찰로 발주하다가

자회사 지원을 위해 '97년 6월부터 수의계약을 변경한 후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와 신규 사업물량에 대한 용역 3,984백만원을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통하여 자회사를 지원하였다.

◆ 공기업별 과징금 부과금액 ◆

(단위:억원)

공기업명	지원금액	과징금
· 한국전력공사	137	28
·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전기통신공사	29	6
- 한국공중전화	2	1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1	-
- 한국냉장	3	2
· 한국가스공사	19	7
· 대한주택공사	42	5
· 한국도로공사	2	1
· 한국토지공사	16	1
· 한국지역난방공사	3	1
계	254	52

ABA주최 제47차 미국 독금법회의의 참가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수)부터 4월 16일(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7차 미국 독금법회의에 참가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제47차 독금법회의는 미국의 변호사협회(ABA, America Bar Association)가 주최하고 미국 변호사 협회 경쟁정책 분야(Antitrust Session)에 소속된 약 2,4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하는 미국 최대의 독금법회의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 부위원장과 국제업무1과 김의환 사무관이 참가하였으며, 피토



프스키 FTC 위원장, 클라인 DOJ 독금차관보, 제

니 프랑스 경쟁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였다.

이번 독금법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과 합병 및 첨단산업에서의 경쟁정책 이슈와 세계화과정의 경쟁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동 독금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1세기 지적재산권문제(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21st Century)가 다루어졌는데, 역사적으로 경쟁법이 경쟁을 보호하는 반면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일시적인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배제하는 등 지적재산권법은 경쟁법과 상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은 경쟁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의 기능을, 경쟁법은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회초리의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 법률은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성 독금국에서는 '95년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적재산권은 기술적 발명품을 경제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이며, 특정기술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또한 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동 가이드라인에 라이선싱 관련사항을 명시하였다고 하였다.

두번째로, 세계화시대의 경쟁법 집행(Antitrust Innovation and the Challenger of Global Enforcement)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특히 일본은 역외적용에 대해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역외적용을 명문화하였으며, MS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내 MS 현지법인에 대한 시정조치 및 나아가서 MS 미국 본사에 대해서도 일종의 역외적용이라 할 수 있는 경고조치를 발하는 등 역외적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밀레니엄 시대의 다국간 합병(Multi-National Merger in the Next Millenium)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국제적 공통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이미 '91년과 '94년에 각각 ABA와 OECD가 신고양식의 통일과 관련한 제안을 하였으며, '97년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3국간 기업결합공통신고양식을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양자협정을 통해 사안별로 정보공유, 조사, 관련시장 확정 등에 대해 협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넷째, 첨단분야에서의 독점에 대한 시정조치(Remedies in High-tech Industries)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등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전통적 시정조치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첨단산업에서도 유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라이선싱이 대표적인 시정조치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무역협회 프로그램(Trade Associations Committee Program)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은 국경을 초월한 합병과 카르텔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화시대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다자간 협력보다는 OECD의 권고에 기초하여 양자간 협력을 추진하여 90년대 들어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적극적 예양은 국가간의 협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한 양자협정체결 역시 계속 확대할 것이며 현재 일본과 협정체결 추진중임을 밝혔다.

또한 이남기 부위원장은 이번 미국 독금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피토프스키 FTC 위원장을 예방하여 한국의 구조조정 추진내용 등 최근 경쟁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제4차 한·미 경쟁정책협의회를 올 9월초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키로 잠정 합의하였다.

약관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화) 소비자보호원 1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약관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약관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제정·시행된 지 13여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약관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여건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신종약관으로부터 불특정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과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동 세미나는 성균관대학교 임흥근 교수의 사회로 「약관법 무효조항의 개선방안」과 「약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외국어대 이은영 교수와 경희대 장경환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의 김재욱 사

무총장, 소비자보호원의 설승현 광고약관팀장, 중소기업연구원 서정대 경제정책담당연구원, 국민대 김동훈 교수, 성균관대 이기용 교수, 손경한 변호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서석희 약관심사2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동 세미나는 순수학문과 실무경험을 접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주제발표자를 약관심사자문위원을 역임하여 약관심사 실무경험이 있는 이은영 교수와 순수학문적으로 연구한 장경환 교수로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지정토론자는 물론 본 세미나 참석한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사업자, 소비자 등 각계의 이해당사자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세미나가 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나 이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약관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약관무효조항의 개선방안

李銀榮 / 한국외국어대 교수

동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은영 교수는 「약관 무효조항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먼저 현행 약관법은 1986년 12월 약관법 제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래양상의 변화로 종전의 무효조항만으로는 약관규제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현행 약관법상의 일반규정은 약관규정의 불공정조항을 규제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본원칙으로서 약관의 심사시에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서상의 어떤 조항이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로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하는 자의 재량의 범위

가 매우 넓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하는 자의 자의(自意)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 약관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법개정시 불공평한 위약금 조항이나 고객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또는 보증채무의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됨을 정하는 조항 등과 같이 그동안의 법 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심결사례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무효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은영 교수는 약관법상 무효의 효과에 대한 일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무효심결조치의 효력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하며,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시에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비자약관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약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張慶煥 / 경희대 교수

한편, 장경환 교수는 「약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먼저 현행 약관규제의 법리적 체계를 보완하여 법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보다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5개 유형의 사업자의 경우에만 불공정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모든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의 시정권고제도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제도를 개정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존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약관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약관작성 기본원칙」 규정도 신설해야 하며, 계약목적, 계약해제, 면책조항 등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약관 명시·설명 의무를 보완하여 소비자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의 제정·사용도 현행법상에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등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분쟁이 빈번한 분야는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의 제정과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보완·개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99년 4월 1일부터 하도급대금의 결제방식이 크게 바뀌는 등 법운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5월 12일(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²⁾와 법조계 등의 전문가³⁾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현금비율의 유지 및 어음만기일 제한 등과 같이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이번 4월에 새롭게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하도급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내부기준을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하도급법 운용에 있어서 그동안 축적된 심결사례나 질의회신 사례 및 법원판례 등과 기타 지침이 준용하고 있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는 발주자로부터 받는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받는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이내로 지급하며,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이나 어음의 지급기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이나 어음의 지급기간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며, 선급금의 경우에도 현금비율을 유지하고 어음만기일 제한을 적용하는 등 현금비율의 유지 및 어음만기일의 제한 적용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를 반영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추가공사를 제외한 추가공사의 경우 추가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예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연이자 계산시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에 따른 소요기간 일수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선급금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 부과일수 산정방법을 명시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심결사례와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동 지침상에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검

1) 본 지침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공정경쟁 제45호) pp.65~86. 참조

2)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9개 관련단체

3) 법 조 계 : 김&장법률사무소 최기록 변호사

연구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

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나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과 같은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부당반포행위, 부담감액행위의 예시를 두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원도급 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 수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예시를 제시·보완하였다.

또한 할인가능어음의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선정한 어음할인대상업체가 발행·배서한 어음 및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으로 명확화하였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생명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등을 추가하였다.

동 지침의 개정안에서는 범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수업체 표창자나 하도급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시 과거 3년간 범위반점수의 누계에서 각각 2점씩 1회에 한하여 감점하고, 모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사건 조치시 1점 감점토록 하는 등 범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였다.

'99년 4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4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5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외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99년 2월중에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신규편입된 회사는 4개사인 반면, 13개사가 계열제외되어 '99년 5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지난 '99년 4월 1일 686개사에서 677개사로 감소되었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5대 기업집단에서 7개사가 순감하고, 6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2개사가 순감하였다.

◆ '99년 4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99. 4. 1	편 입			제 외						증 감	'99. 5.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계	합병	청산	지분 매각	지정 제외	기타	계		
전 체	686	4	-	4	4	1	4	3	1	13	△9	677
1~5대	234	-	-	-	2	1	1	3	-	7	△7	227
6~30대	452	4	-	4	2	-	3	-	1	6	△2	450

◆ '99년 4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편입 : 4개사(회사설립 4)

◎ 제외 : 13개사(합병 4, 지분매각 4, 청산종결 1, 친족분리 3, 기타 1)

구분	편 입			제 외			증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대	-	-	-	현대자동차서비스(주)	차량제조업	현대자동차(주)에 합병	△3
				한국프랜지공업(주)	자동차부품제조업	친족분리	
				서한산업(주)	의료기기제조업	친족분리	
삼성	-	-	-	삼성지이의료기기(주)	도장강관제조업	지분매각	△2
				(주)아이피씨	전자관 및 전자부품제조	청산	
엘지	-	-	-	엘지기공(주)	전문건설업	친족분리	△2
				엘지금속(주)	1차 금속산업	엘지산전(주)에 합병	
한진	토파즈여행정보(주)	전산예약시스템	회사설립	-	-	-	1
한화	환경시설운영(주)	서비스업	회사설립	-	-	-	1
금호	한국씨이에스(주)	집단에너지생산	회사설립	금호산업개발(주)	토목공사업	금호개발(주)에 합병	0
롯데	(주)코리아세븐	유통업	회사설립	-	-	-	1
한라	-	-	-	(주)갑코	자동차부품제조	지분매각	△1
효성	-	-	-	(유)효성에이비비	발전기제조	(주)아세아브라운보메리에 합병	△1
신호	-	-	-	(주)신호스틸	강관제조 및 판매	임원겸임 해소	△2
				신호기전	기타특수목적용 기계제조	지분매각	
새한	-	-	-	(주)대경인더스트리	플라스틱제품제조	지분매각	△1
계	4			13			△9